

CFC 대체물질 사용에 따른 냉장고 및 공조기기분야 특허분쟁예상

국내기업 대처방안 강구필요

국제환경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냉동공조기 기류에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CFC류 냉매를 1996. 1. 1부터 100% 감축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이다. 세계 주요 각국들은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환경공해가 전혀없는 NON-CF류 대체냉매 및 대체냉매 적용 시스템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개발된 기술을 이미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등 이 분야의 기술 경쟁에서 선점고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히다찌 등 외국의 선진기업들은 대체 냉매 적용 냉동시스템 분야의 개발 기술들을 '88년도부터 우리나라

라에도 특허로 출원하여, 현재 특허출원건수가 15건이나 되며, 이 중 2건은 이미 특허가 허여되었고, 더욱이 이 출원된 특허기술 내용을 보면, 혼합냉매 사용기술, 압축식 냉동시스템의 유회방법, 압축기의 마찰면 표면처리 기술 등 대체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 있어서 원천기술로 판단된

CFC 대체냉매 이용기기 관련 특허현황

• 특허등록현황(2건)

특허권자	출원국	출원번호	공고번호	발명의명칭
마스시다	일본	89- 19820	93- 4384	열 펌프 장치
텐끼(주)		88- 9337	93- 852	"

• 특허출원현황(13건)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공개번호	발명의명칭
히다찌	일본	93- 16766	94- 4292	냉동사이클
세이샤구쇼(주)	"	93- 29	93- 16734	냉장고
"	"	92- 2525	92- 18354	밀폐형 압축기
"	"	91- 5123	91- 17142	냉동장치용 작동매체 및 이를 이용한 냉동장치
"	"	91- 20310	92- 10228	냉동장치 및 냉매압축기
이데미쓰	일본	92- 19866	93- 8404	압축식 냉동시스템의 유회방법
"	"	91- 11162	93- 911	"
HRB-L.L.C	미국	92-703341	93- 701716	탄화수소를 사용한 단일 및 다단식 냉동기 및 이러한 냉동방법
다이킨	일본	90- 18345	92- 8439	공비 및 공비유사혼합물 및 이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냉동 또는 공기조화 장치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				
도시바	일본	90- 21890	91- 12542	HFC 134a용 냉매압축기
산요텐끼(주)	일본	92- 17290	93- 6406	냉동장치
"		92- 21605	93- 10506	"
미쓰비시	일본	92- 16890	미공개	

국제동향

• 주요규제물질스케줄

규제물질	기준년도	규제 일정
CFC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 1. 1부터 75% 감축 • 1996. 1. 1부터 100% 감축
Hallons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 1. 1부터 '86년도 수준동결 • 1992. 1. 1부터 50% 감축 • 1994. 1. 1부터 100% 감축 <li style="padding-left: 20px;">단 필수용도 인정
HCFC	'89년도 CFC 소비량의 3.1%에 '89년도 HCFC의 소비량을 합한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1. 1부터 '89년도 수준 동결 • 2004. 1. 1부터 35% 감축 • 2010. 1. 1부터 65% 감축 • 2015. 1. 1부터 90% 감축 • 2020. 1. 1부터 100% 감축 • 2030. 1. 1부터 100% 감축

다.

우리나라도 '92. 5. 7일자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이 되었고, 이미 금성, 삼성, 대우에서는 대체냉매인 HFC-134a를 사용한 새로운 모델의 냉장고를 개발하여 일부 시장에 출시하였고, '96년도부터의 CFC류 사용규제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의 이 분야의 특허출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분야의 제품들이 아직 시작품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특허분쟁에 내연되어 있지만, 대량생산되는 '95년부터는 특허 저촉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대체냉매 적용기술에 대하여는 외국 선진기업들이 기술제공 및 특허권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 기업들이 기술공세를 시작할 경우 아직 이렇다할 특허출원이 없는 우리 기업들은 효과적인 대처수단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나라에 출원된 특허는 물론, 우리나라에 출원되지 않았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출원된 외국특허들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미리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외국기업들은 특허전략상 대체냉매적용기술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

지 않고 일반적인 냉동사이클의 개선에 따른 성능향상에 관한 발명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관한 출원도 대체냉매적용과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분야에 예상되는 특허문제는 어느 한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이 전 업계에 미칠 것이므로 각 기업이 공동대응 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미리 갖추어야 할 것이고, 각 업체간의 중복연구의 방지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이나 특허권을 공유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선싱도 모색하면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 중재센터 개설

기업체 및 사인간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 서비스 제공

특허청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업무를 총괄하는 UN 산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

산권기구」(WIPO)는 기업체 등 사인간에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라이선스 계약상 조항

위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중재센터를 개설, 오는 7

국제동향

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특허 및 상표권의 침해,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 등 지적재산권 문제와 연관된 기업간 또는 개인 권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은, 당사자간의 협상(negotiation, consultation)에 의한 직접해결, 구속력을 갖는 중재(arbitration)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침해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별된다. 중재란 분쟁당사자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중재계약에 근거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심판부(보통 3인)의 결정에 최종적인 분쟁해결의 권능을 부여하여, 중재결과에 양 당사자가 기속되는 형태의 분쟁해결 절차이다.

금번 WIPO 중재센터에 의한 분쟁해결은 95년중 출범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상의 분쟁해결 절차와 비교할 때 WTO 절차는 국가간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의무 위반 시 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금번 WIPO 분쟁 중재센터에서는 국가간 분쟁이 아닌 기업체 또는 사인간의 분쟁 양당사자 또는 WIPO가 선임한 중재인에 의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장점은 침해소송 등에 의한 해결에 비하여, 중재절차, 적

용법률, 언어 등의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중재절차가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적일 수 있으며,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시 제3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는 중재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관련분쟁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재요청사실 및 결과에 대한 비밀성의 보장이 가능하여, 공개소송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비밀 및 기술개발 계획 및 체계 등에 대한 완전한 보안의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절차가 간편하고,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가져올 수 있는 기업간, 당사자간 감정의 대립을 완화하여 사업상 유대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많은 비용 및 시간이 소모되고 비밀성이 보장되지 않는 법정소송보다는 위에서 언급된 장점을 가진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상설 중재기관인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통계에 따르면, 1993년 한해동안 130여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중재로서 해결되었으며, 계속 증가추세라고 한다.

금번, WIPO 중재센터의 설립의 주된 목적은 점증하는

지적재산권 관련분쟁발생의 가능성에 직면하여,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절차의 제공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반 법관이 아닌,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중재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보다 신속적인 분쟁해결책의 마련을 도모하고, 국적을 달리하는 사인간의 지적재산권 관련분쟁을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인 중재기관의 설립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WIPO 중재센터 설립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특히 선진국으로부터의 특허침해 소송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하에 선진국 권리자와 로열티 지불 등의 방법으로 화해해 버리는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에서 탈피하여, WIPO의 중재서비스를 적극 활용, 특허 등 침해관련 분쟁에 적극 대응하므로써 좀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WIPO는 구체적인 중재규칙안과 중재계약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이를 확정,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